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증 총량제 도입〉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93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인증 총량제 도입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9.
3. 회 부 일 : 2025.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이 일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그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품 등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함.

정부에서는 그간 유사·중복된 인증 통합,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등의 방식으로 인증을 정비해 왔으나, 인증의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인증 총량제 도입

-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 대상 인증의 범위 및 총량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8조의4(인증의 총량 관리) ① 위원회는 인증(규제 중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의 불필요한 증가를 방지하고 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구체적인 범위, 총량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24조(기능)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인증의 총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적으로 “인증”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제품의 성능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환경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인증”을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적합성평가”¹⁾라고 하는데, 제품, 서비스의 특성,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인증, 시험, 검사, 지정 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됨.²⁾

□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다양한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공신력 확보, 소비자 선택 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취득비용 및 유지 비용 등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요인³⁾이 되거나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함.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19.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예시: 전기용품 안전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등

3) 예를 들어,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인증으로, KS인증 보유기업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다수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 부담이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국가표준기본법」⁴⁾에 따라 2019년부터 전체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그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제도를 운영 중이며, 유사 인증 통·폐합⁵⁾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⁶⁾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인증)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의 숫자는 지속 증가하여, 2025년 11월 기준,⁷⁾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제도의 총계가 256개에 이름.

4)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및 절차 등(이하 “존속 필요성등”이라 한다)을 3년 주기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예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폐지), 수산식품 명인(인증에서 제외, 지정제로 전환), 건물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등(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편한 인증 폐지 등 연간 약 1,527억원 기업 부담 경감」, 2024. 2. 26.)

6)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 2025.11.06. 검색)

<부처별 인증제도 운영현황>

	담당 부처	인증제도		
		수	법정의무	법정임의
1	고용노동부	6	3	3
2	공정거래위원회	2	0	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2	14
4	관세청	1	0	1
5	교육부	4	1	3
6	국가보훈부	1	0	1
7	국토교통부	43	22	21
8	기상청	4	3	1
9	농림축산식품부	20	2	1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0	3
11	문화재청	3	0	3
12	문화체육관광부	10	5	5
13	방위사업청	4	2	2
14	보건복지부	14	4	10
15	산림청	11	2	9
16	산업통상자원부	21	13	8
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	0	2
18	소방청	6	4	2
19	식품의약품안전처	8	5	3
20	여성가족부	2	0	2
21	중소벤처기업부	3	0	3
22	특허청	1	0	1
23	해양경찰청	1	1	0
24	해양수산부	29	13	16
25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3	0	3
26	행정안전부	12	4	8
27	환경부	26	16	10
합계	합계	256	102	154

(자료: 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2025.11.06. 검색)

□ 이로 인해, 기업의 인증 취득·유지 비용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안전 제고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⁸⁾

□ 개정안은 정부의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정·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증 증가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작용이 큰 인증의 경우 폐지·통합해야 하지만, 순기능적 인증의 경우에는 신설할 필요성도 있는데, 단순히 양적 기준인 ‘총량’으로 관리하는 경우 국민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인증제도 도입이 지연될 수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없이 의원입법을 통해 신설되는 인증의 경우에는 총량 관리가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8)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편한 인증 폐지 등 연간 약 1,527억원 기업 부담 경감」, 2024. 2. 26

□ 국무조정실은 개정안에 대해 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실시 중인 규제영향분석 대상에 ‘인증’이 이미 포함되며, 불필요한 인증제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사후적으로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② 인증은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부처 간 일관성 있는 총량 설정이 어려우며, ③ 과학적 정책 연구의 축적을 토대로 인증의 정의와 유형, 비용·효과 등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인증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고려해, 최근 인증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⁹⁾하여 시행 중이므로, 기존 제도와의 중복, 정합성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원,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① 인증을 관리하는 기존 제도가 이미 존재하며, ② 숫자 기준 총량제의 부작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③ 자율적 임의 인증까지 인증 총량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9)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5년 2월 규제개혁위원회 보고·확정)
- 신설 인증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전에 기술규제위원회(규제개혁위 자문기구)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검토 절차를 강화(2024년 9월~)
- ‘적합성 평가’를 통해 기존 인증 대폭 정비(실적 저조, 공공이익과 무관하거나 해외 유사사례가 없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등)를 추진 중임(2025년~)

문 의 처

02)6788-5113
